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처리 기간을 신설하고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며 보상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경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4. 12. 13. ~ 2025. 1. 22.)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물건”을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과 물건”으로, “재산상 손실”을 “손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나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소속된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제10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요건과 절차를”을 “명백히 요건과 절차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⑦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⑧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청구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 승인 통지서”를 “결정 통지서(일부·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일시금으로”를 “일시불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새로 발견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손실보상 청구의 각하·기각 또는 일부인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각하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5명 이상 7명”을 “7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 경찰관과 다음”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을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속 경찰관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가 있거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0조제5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의 제목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

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중전의 제3호) 및 제3호(중전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손실을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망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자의 보상금액 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부상자에게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금액을 보상한다.

3. 생명·신체상 손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상 손실을 입은 당사자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를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일부·전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7항”을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

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7항”을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임명위원 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신규, □ 추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음	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발생 일시 및 장소		
	손실내용 및 청구이유		
구 분	[] 물건의 멸실·훼손 손실	[] 생명·신체 손실	[] 그 외 손실
신청액	손실액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통지 방법	[] 우편	[] 전화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뒷 면 참 조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구분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확인)
물건의 멸실·훼손 손실	수리비	1. 주민등록등(초)본 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환가액	3. 등기부등본 4.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생명·신체 손실	요양비	1. 주민등록등(초)본 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휴업보상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인 근무처의 장의 월 수입액 증명서) 등
	장해보상	1. 주민등록등(초)본 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3. 소득금액증명
	유족보상 및 장례비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손실	기타 보상	1. 주민등록등(초)본 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경찰청장등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실확인, 통지, 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처리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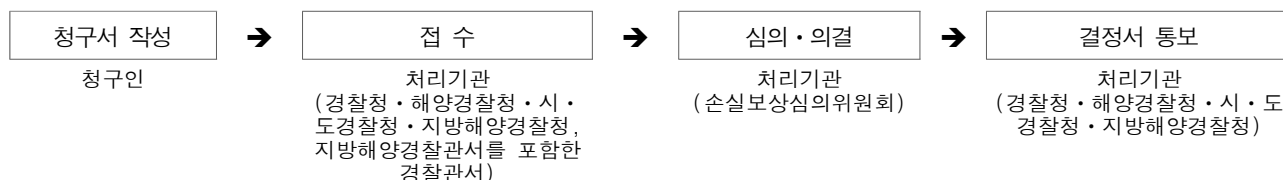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 또는 관련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3.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청장등이 증빙·보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손실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손실보상 결정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상금 신청 결과	(☐ 일부인용 · ☐ 기각 · ☐ 각하) 통지서 통보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이의신청의 이유 ※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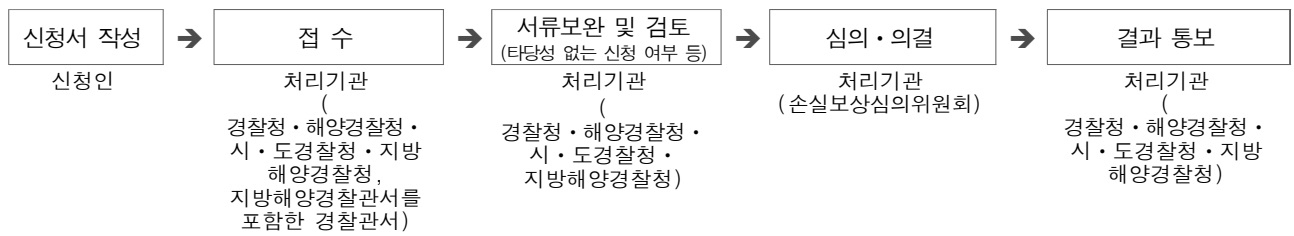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이의신청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결정 이유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〇〇경찰청장

직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청구 (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보상금지급 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경찰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생략)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u>재산상 손실</u> 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u>생명·신체에 대한 손실과 물건-----손실-----</u> -----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u>사람</u> 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u>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나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u> 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신설>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 ----- ----- --- <u>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u>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u> ----- ----- ----- -----. 1. <u>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u> 2. <u>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경</u>

② (생략)

<신설>

<신설>

찰관이 소속된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
서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경찰청장-----

다음 -----

-----.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2. 손실보상 청구가 명백히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생략)

<신 설>

<신 설>

⑥ -----

-----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

-----.

1. -----

----- 결정 통지서(일부·전부)

2. (현행과 같음)

⑦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⑧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

되, 지급방법은 청구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⑨ -----
----- 일시
불로-----

-----.

⑩ -----

----- 새로 발견된 -----

-----.

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 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 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 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 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 한다.

<신 설>

----- 제9항까지의 --
-----.

<삭 제>

<삭 제>

⑪ ----- 제10항-----

-----.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손실보상 청구의 각하·기각 또 는 일부인용 결정에 대하여 불 복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해 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 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청장, 해양경 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 7호 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각하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7명 이상 9명 -----
 -----. 다만, 청구금액이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신 설>

1. ~ 3. (생략)

④·⑤ (생략)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

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 다음 -----
----- 사람 -----

-----.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
-----.

1. 소속 경찰관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장)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

영)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 ③ (생략)	영) ① <u>위원장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거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0조제5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0348